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척당 6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여 운영 중인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꿔 2023년 11월 6일에 합의된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의 도입(안 제9조)

- 1) 「한국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23.11.6)」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선박 1척당 외국인 부원 6명 이내’로 제한하던 승선기준을 한국인 의무승선으로 변경하고, 세부 인원은 고시에 위임토록 함
- 3)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 경제 안보를 유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필수선박 승선기준의 예외 변경(안 제9조)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선박 수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선원의 추가 승선을 허용하던 것을 선원의 상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한국인 선원의 즉시 승선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함

다.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기준 변경(안 제16조)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인원수 차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인 선원의 의무 승선 인원수 차이로 변경함

라.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감액 기준 변경(안 별표2)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외국인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만큼 손실보상을 감액하던 것을 한국인 의무승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손실보상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선박등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준은 선박 1척당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 6명 이내로 한다”를 “기준(이하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 기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초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 제한을 명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 명령을 내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을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으로,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의 수리”를 “선원의 상병(傷病)”으로, “발생한 경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을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한국인 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한국인 선원의 수를 제1항의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제4항 중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을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을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손실보상금 = (A-B) × (C-D)	
A: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 기준에 따른 한국인 선원의 수	
B: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 기준에 따른 한국인 선원의 수	
C: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D: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제16조제4항 중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을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 (제16조제4항 관련)”을 “한국인 선원의 의무 승선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 (제16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위반기간 위반인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기간
위반인원수

별표 2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기간	1개월이하	2개월이하	3개월이하	3개월초과
위반인원수				

별표 2 비고 제1호 본문 중 “외국인 선원 제한 기준을 초과한”을 “한국

인 선원 의무승선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초과승선에 해당하는”을 “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제9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가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u>기준은 선박 1척당</u> <u>「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u> <u>부원 6명 이내로 한다.</u>	① ----- ----- ----- <u>기준(이하 “한국인 선</u> <u>원의 의무승선 기준”이라 한다.)</u> <u>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u> <u>고시한다.</u>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면 서 제1항의 기준을 <u>초과하는 외</u> <u>국인 선원에 대해 국가필수선박</u> <u>에의 승선 제한을 명할 수 있다.</u> 이 경우 국가필수선박 지정을 받은 자는 <u>외국인 선원 승선 제</u> <u>한 명령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u> <u>국인 선원의 수를 제1항의 기준</u> <u>에 맞게 조치하고 그 사실을 지</u> <u>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u> <u>려야 한다.</u>	② ----- ----- ----- <u>충족하지 못하</u> <u>는 경우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u> <u>선원 의무승선 명령을 내릴 --.</u> ----- ----- <u>한국인 선원 의무승선</u> ----- <u>한</u> <u>국인</u> -----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 산부장관은 <u>선박의 수리 등 특</u> <u>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외국</u> <u>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u> <u>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하지</u>	③ ----- ----- <u>선원의 상병(傷病) -</u> ----- <u>발생하고, 해당 선박</u> <u>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u> <u>이 한국인 선원을 승선시키는</u>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 ---.다
만, 선박소유자는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한국인 선원의 수를
제1항의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 -----

-----.

제16조(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① ----

-----.

$$\text{손실보상금} = (A-B) \times (C-D)$$

- A: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
인 선원의 수
- B: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
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
- C: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
의 연간 평균임금
- D: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
간 평균임금

② · ③ (생략)

④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위반
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
액하여 지급한다.

$$\text{손실보상금} = (A-B) \times (C-D)$$

- A: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 기준에 따른 한
국인 선원의 수
- B: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 기준에 따른 한국
인 선원의 수
- C: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D: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725